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06호 2013. 11. 13(수)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57호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058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059호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060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061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062호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 28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73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30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1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 44
- 사천시 고시 제2013-177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 46
- 사천시 고시 제2013-18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 48
- 사천시 고시 제2013-183호 2013년도 사천시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 49
- 사천시 고시 제2013-184호 하천점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 60
- 사천시 고시 제2013-185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 61

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

##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사천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분야별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인권증진교육 실시)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인권교육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

평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단,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시민의 인권 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

제15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6)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인권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인권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7)

## 사천시 조례 제10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8)

[별표]

##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사 천 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읍	사천읍 읍내로 52	
정 동 면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사 남 면	사남면 진삼로 1108	
용 현 면	용현면 진삼로 637	
축 동 면	축동면 길평1길 20	
곤 양 면	곤양면 성내공원길 11	
곤 명 면	곤명면 월전새길 64	
서 포 면	서포면 자구로 465-17	
동 서 동	수남길 102(서동)	
선 구 동	각산로 22(선구동)	
동서금동	동금로 27(동금동)	
별 용 동	별용길 54(별리동)	
향 촌 동	향촌5길 28(향촌동)	
남 양 동	임내안길 65(송포동)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9)

## 사천시 조례 제105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중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동거하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사업 및 지원에 따른 심의) 제4조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는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1)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장은 제4조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2)

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설치) 사천시는 제4조의 가족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 상담, 문화 등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센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큰 하자가 없는 경우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3)

제1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4)

## 사천시 조례 제106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사천시가 마련한 성인중증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 재활훈련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재활 시설을 말한다.
3. “성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등급표(제2조 관련)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중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5)

제3조(책무)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에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성인중증장애인 교육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심의)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원활히 운영함에 있어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2.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보호자 상담지원
2.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
3.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7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은 초·중등교과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의 사업)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2. 성인중증장애인 특수교육
3. 성인중증장애인 재활훈련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6)

4.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교육자(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제9조(평생교육시설 종사자) ①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각종 재활치료사와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한 사람.

②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장애인복지나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평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시설 입학과 퇴학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성인중증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7)

## 사천시 조례 제106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제2장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8)

(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19)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 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0)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사천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5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1)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  
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 결정(경계  
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요구에 대해 별지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2)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해당 의결 안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전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전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3)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제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제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2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단, 사업량이 적을 경우에는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한개 팀으로 운영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관리
4.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9. 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10.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전 시 공 보

제306호(24)

11.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추진 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일필지조사 업무
14. 사업지구 사전조사표 작성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6.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18.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사업지구 경계점 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확정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21. 입체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23.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25. 사업지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6. 사업지구 성과열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28.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9.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 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5)

제30조(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6)

[별지 서식]

##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 의결서 (제19조제5항 관련)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m <sup>2</sup>
--------	----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결정·의결 이유

붙임 : 지적확정조서

년 월 일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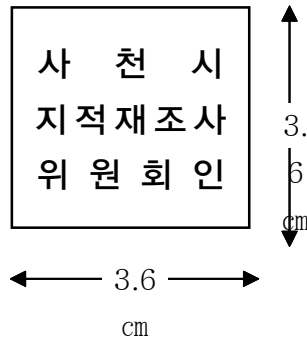
210mm × 297mm[백상지 80g/m<sup>2</sup>]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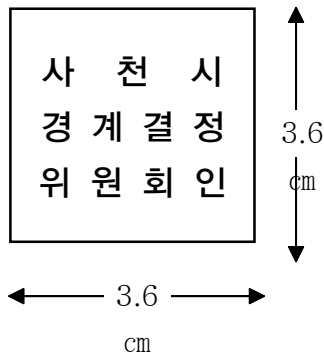
[별표 1]

##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관인 조각 (제7조제5항 관련)



[별표 2]

##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관인 조각 (제16조제6항 관련)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8)

## 사천시 조례 제10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0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시설 조성, 분양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사천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산업단지 분양 수입금
2. 선투자 사업비 회수금, 출자회수금
3. 출자에 대한 배당금
4.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29)

1. 산업단지조성사업 비용
2.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차입금의 상환
4.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5. 일반회계 진출금
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담당주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사천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0)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73호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1월 13일

###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을 “사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호의”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신원” 을 “결격사유”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1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한정치산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1)

제12조제6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징계의” 를 “징계에” 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하고,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7조 중 “공과 사를” 을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을” 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겸직금지) 근로자는 업무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 중 “첨부하여” 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로자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소속부서장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근로자에게” 를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휴가 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5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전시근로 동원법」,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 를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한한다.” 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마할 경우 : 2개월 이내(단, 당선될 경우에는 퇴사한다)

제42조 본문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규정에 의거” 를 “에 따라” 로 하고, “내지” 를 각각 “부터” 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퇴직금) 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퇴직금은 중간정산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이라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3)

④ 제3항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⑤ 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1조제2호 중 “공로자”를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회개하계”를 “잘못을 뉘우치게”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자는 당해”를 “사람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6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45일”을 “15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6조제4항제2호 중 “해당자”를 “해당되는 사람”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이환된 자”를 “걸린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8조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9조 중 “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를 “에 따라 보상을 한다.”로 한다.

제80조 중 “민법,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3항, 제47조제1항, 부칙 제2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4)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2조 중 “자를” 을 각각 “사람을” 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호, 같은 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제53조제4호, 같은 조 제8호, 제55조제6항, 제62조제3항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37조, 제78조제8호 중 “자는” 을 각각 “사람은” 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53조제2호,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8호, 제57조제1항 중 “기타” 를 각각 “그밖에” 로 한다.

제36조, 제72조제3항 중 “범위 내” 를 각각 “범위” 로 한다.

제3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항 중 “범위 안” 을 각각 “범위” 로 한다.

제52조, 제76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제60조제5항, 제67조 중 “기타의” 를 각각 “그 밖의” 로 한다.

제60조제8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6)

[별지 제2호서식]

정수책정승인서				
종 별				
채용목적				
인원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용기간				
소요시간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원)	산 출 기 초
승인조건				
기타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수의 책정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사 천 시 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 하</p>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7)

[별지 제5호서식]

## 근로계약서

근로관계당사자인 대표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사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 당사자

가. 사용자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나. 근로자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 2. 근로조건

가. 취업장소 : (소속부서 : )

나. 직 종 : (담당업무 : )

다. 임 금 :

라. 계약기간 :

마. 근로시간 :

바. 특약사항 :

사.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사천시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근로자 : (인)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8)

[별지 제9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 속	②직 종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input type="checkbox"/>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사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39)

[별지 제10호서식]

##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속	
		한 자		③ 직종	
	④ 주 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즉시 제출할 것</li> <li>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li> <li>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li> </ol>				
<p>「사천시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위원회위원장 [인]</p> <p>귀하</p>					

(절취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 소				
<p>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인)</p> <p>○○위원회위원장 귀하</p>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0)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3항 관련)

### 1. 행정사무원 · 단순노무원 · 도로보수원 · 환경미화원의 정수

부 서 별	계	행 정 사무원 ①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⑥	환 경 미화원 ⑦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②	현장지도 단속감시 담당인부 ③	자격요 하는부 인 ④	안내매 표단순 조작인 부 ⑤		
<b>총 계</b>	<b>181</b>	<b>0</b>	<b>87</b>	<b>41</b>	<b>9</b>	<b>13</b>	<b>24</b>	<b>16</b>	<b>78</b>
<b>소 계</b>	<b>68</b>		<b>52</b>	<b>16</b>	<b>9</b>	<b>4</b>	<b>23</b>	<b>16</b>	
본 청									
기획감사담당관	1		1	1					
총 무 과	8		8				8		
정보법무과	2		2				2		
주민생활지원과	2		2			1	1		
사회복지과	6		6	2			4		
문화관광과	6		6	5			1		
체육지원과	8		8	1		3	4		
민원지적과	1		1				1		
회 계 과	1		1				1		
건 축 과	1		1		1				
건 설 과	1		1	1					
재난관리과	1		1	1					
도로교통과	19		3		3			16	
녹지공원과	10		10	5	5				
의회사무국	1		1				1		
직 속 기 관									
<b>소 계</b>	<b>13</b>		<b>13</b>	<b>3</b>		<b>9</b>	<b>1</b>		
보 건 소	5		5			5			
농업기술센터	8		8	3		4	1		
사 업 소									
<b>소 계</b>	<b>99</b>		<b>21</b>	<b>21</b>					<b>78</b>
하수도사업소	21		21	21					
환경사업소	78								78
출 장 소									
<b>소 계</b>	<b>1</b>		<b>1</b>	<b>1</b>					
신수출장소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1)

## 2. 청원경찰의 정수

부서별	합계	경 비			감 시					
		소계	청 경 사 비	시설물비	소계	하천 감시	도로 교량 감시	산 립 감 시	주 정 차 순찰	재 해 방 예 찰
<b>총 계</b>	<b>30</b>	<b>22</b>	<b>2</b>	<b>20</b>	<b>8</b>	<b>2</b>	<b>1</b>	<b>1</b>	<b>1</b>	<b>3</b>
본 청	소 계	26	18	2	16	8	2	1	1	3
	총 무 과	2	2	2						
	사회복지과	1	1		1					
	문화관광과	2	2		2					
	체육지원과	12	12		12					
	지역경제과	1	1		1					
	건 설 과	2				2	2			
	재 난관 리과	3				3				3
	도로교통과	2				2		1		1
	녹지공원과	1				1			1	
사 업 소	소 계	4	4		4					
	환경사업소	1	1		1					
	하수도사업소	3	3		3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2)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4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본인	90
	배우자	5
유산 또는 사산	본인	최대 9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그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3)

[별표 3]

## 징계위원회 위원자격 범위(제56조제3항 관련)

구 분	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자격요건	비 고
징계위원회	6 ~ 5급 상당 공무원	총무국장	

[별표 4]

## 징계양정 감경기준(제63조 관련)

관리규정 제65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	관리규정 제63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해 입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고)

☞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규정 제63조에 따른 감경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경감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4)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3 - 175 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3-7호(2013. 9. 16)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 885.4m<sup>2</sup>(직접 885.4m<sup>2</sup>, 간접 - m<sup>2</sup>)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72-95번지선 공유수면(중방항)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 공사기간 : 2013. 10. 15. ~ 2013. 11. 30.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5)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수리일자 : 2013. 9. 16.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6)

사천시 고시 제2013-177호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사천시 의회 의결(2013. 10. 16.)을 득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사 천 시 장

###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482,140,014	465,559,191	16,580,823
일 반 회 계	439,784,042	423,758,557	16,025,485
특 별 회 계	42,355,972	41,800,634	555,338
상 수 도 사 업	16,161,374	16,161,374	0
하 수 도 사 업	8,947,877	8,947,877	0
주 택 사 업	441,852	430,413	11,439
지 하 수 관 리	240,664	240,664	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512,973	371,900	141,073
의 료 급 여 기 금	1,931,787	1,864,951	66,836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	979,839	979,839	0
토지구획정리사업	223,131	222,057	1,07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354,944	316,438	38,506
농 공 단 지 사 업	3,366,819	3,326,819	4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717,410	2,711,000	6,4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59,287	1,959,287	0
수 질 개 선 사 업	1,818,015	1,768,015	50,00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700,000	1,500,000	200,00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1,000,000	1,000,000	0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7)

## □ 세 입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b>계</b>	<b>482,140,014</b>	<b>451,730,600</b>	<b>16,580,823</b>
<b>일 반 회 계</b>	<b>439,784,042</b>	<b>423,758,557</b>	<b>16,025,485</b>
지방세수입	44,433,000	44,433,000	0
세외수입	44,354,019	43,186,309	1,167,710
지방교부세	164,534,271	163,753,654	780,617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8,910,000	15,710,000	3,200,000
보조금	166,552,752	155,675,594	1,0877,158
지방채	1,000,000	1,000,000	0
<b>특 별 회 계</b>	<b>42,355,972</b>	<b>41,800,634</b>	<b>555,338</b>
세외수입	40,140,270	39,584,932	555,338
보조금	2,215,702	2,215,702	0
지방채	-	-	

## □ 세 출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b>계</b>	<b>482,140,014</b>	<b>465,559,191</b>	<b>16,580,823</b>
<b>일 반 회 계</b>	<b>439,784,042</b>	<b>423,758,557</b>	<b>16,025,485</b>
정책사업	357,713,667	342,224,977	15,488,690
행정운영경비	65,780,776	65,595,567	185,209
재무활동	16,289,599	15,938,013	351,586
<b>특 별 회 계</b>	<b>42,355,972</b>	<b>41,800,634</b>	<b>555,338</b>
정책사업	37,926,169	37,360,290	565,879
행정운영경비	1,765,185	1,765,185	0
재무활동	2,664,618	2,675,159	-10,541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8)

사천시 고시 제2013-182 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3-7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3년 9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72-95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내역
  - PE부잔교 설치  
- 885.4㎡ [PE부잔교(L=20m, B=4.0m), 알루미늄도교(L=12m, B=1.0m)]
6. 공사기간
  -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1월 30일
7. 점용·사용 승인(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3. 10. 30.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49)

사천시 고시 제2013-183호

## 2013년도 사천시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 사천시 수렵장 설정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사 천 시 장

### 수렵장 설정 고시

#### ■ 수렵기간

- 2013. 11. 1 ~ 2014. 2. 28(약 4개월간)
- 제외기간 : 2014.01.30.~2014.02.02(설연휴)

#### ■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사천시 수렵장
- 위치 : 사천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최대 수용인원 : 714명
- 총 면적 : 398.62km<sup>2</sup>(39,862ha )
  - 수렵장 설정면적 : 214.43km<sup>2</sup>(21,443ha )
  - 수렵장 제외면적 : 184.19km<sup>2</sup>(18,419ha )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0)

## ■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 7.33km<sup>2</sup>(733ha )
- 공 원 구 역 : 5.91km<sup>2</sup>(591ha )
- 군사시설보호구역 : 79.71km<sup>2</sup>(7,971ha )
- 도 시 지 역 : 90.82km<sup>2</sup>(9,082ha )
- 문화재보호구역 : 0.13km<sup>2</sup>(13ha )
- 관 광 지 : 0.29km<sup>2</sup>(29ha )

## 총기보관 파출소 현황

관리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읍내지구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51	055-852-0112
삼천포지구대	사천시 동금동 141-2	055-835-0112
용현파출소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29-1	055-834-0112
사남파출소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20	055-854-4112
곤양파출소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3	055-853-0112
곤명파출소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289	088-854-0112
서포파출소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887-6	055-853-1112
남양파출소	사천시 죽림동 594-4	055-834-3112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총기출고시간 : am 06:00 ~ 이후

총기입고시간 : ~ pm 22:00 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1)

##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청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055-831-2762
사천읍사무소	사천시 사천읍 읍내로 52	055-831-5003
정동면사무소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055-831-5059
사남면사무소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	055-831-5088
용현면사무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637	055-831-5119
축동면사무소	사천시 축동면 길평1길 20	055-831-5149
곤양면사무소	사천시 곤양면 성내공원길 11	055-831-5171
곤명면사무소	사천시 공면면 원전새길 64	055-831-5211
서포면사무소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6	055-831-5231
별용동사무소	사천시 별용길 54	055-831-5354
향촌동사무소	사천시 향촌5길 28	055-831-5385
남양동사무소	사천시 임내안길 65	055-831-5407

※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 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금은 10.31일한 환불조치 가능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2)

(단위 : 천원)

연구별		기간별		기간별(천원)	
				엽기내 (4개월)	수용 인원
1종 엽총	적 색 포 획 승 인 권		40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3개(마리) 1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3개(마리)	130명	
1종 (엽총 공기총) 및 2종	황 색 포 획 승 인 권		25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고 라 니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3개(마리) 20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50 명	
	청 색 포 획 승 인 권		15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조류 1종 조류 2종 기타조수류	15개(마리) 5개(마리) 5개(마리)	340명	
수 용 인 원 합 계				520명	

\* 조류1종 : 꿩, 멧비둘기, 참새

\* 조류2종 : 오리류 5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엽총)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 단기간 수렵장 이용자(30일,10일) 및 확인표지(Tag) 추가 구매는 확인표지(Tag)잔량에 따라 2013.11.11일 재 고시 예정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3)

## 포획승인 신청(1차)

### ■ 승인방법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계좌입금방식에 의한 선착순)

- 입금 개시일 : 2013. 10. 18(금) 09:30부터(5일간)  
※ 최초 신청은 엽기 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되, 수용인  
원이 초과되면 자동 차단됩니다.

### ■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적색포획승인권 (4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19-11 (선착순 380명)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천시  
수렵장)  
※(40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 황색포획승인권 (25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13-01 (5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  
협회 사천시수렵장)  
※ (25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 청색포획승인권 (15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136-1516-11 (47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  
협회 사천시수렵장)  
※ (150천원 단위로만 입금되며 일괄 송금 불인정)

### ■ 포획승인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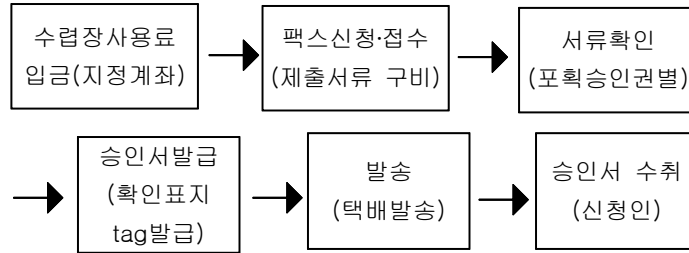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13. 10. 18(금) ~ 10. 23(수) (6일간)
- 접수시간 : 2013. 10. 18일 오전 09:30분부터
-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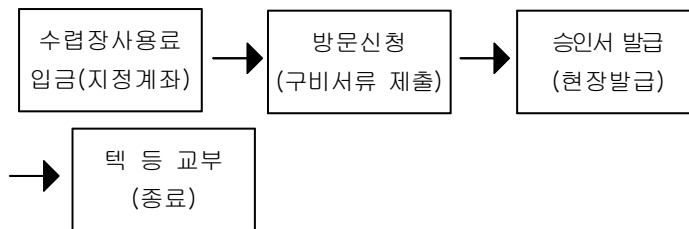
## • 처리절차

###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 신청시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보낸 뒤 원본응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경남지부)



※ 방문접수 및 발급은 포획승인권(적색, 황색, 청색)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되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 (사천시 홈페이지)

## • 접수처

① 팩스접수 : Fax) 055-759-2627(대표번호)

② 연 락 처 : Tel) 055-759-2626(대표번호)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경남지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48-13번지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5)

## 2차 포획승인 신청

- 수용인원과 확인표지(Tag) 잔량에 따라 2차 접수
- 접수기간 : 2013. 11. 11 ~ 수용인원 및 확인표지(Tag) 소진 시 까지
- 발급방법 : 추가고시

##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Tag)에 포획일시·장소 등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야생동물을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포획승인서 뒤쪽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기재하여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를 발급한 수렵장 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확인표지(Tag) 및 수렵동물을 훼손 또는 가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6)

##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하되 1인당 엽견 2마리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엽견분실에 대비하여 수렵장 출입전 엽견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 등을 엽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7)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수렵관련 벌칙 규정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제한 사항(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55조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자

### ■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6조 제1항내지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
  -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58)

##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떠는 낙하 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사 전 시 공 보

제306호(59)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수렵총기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렵시즌에는 매일 밤 10시까지, 수렵이 종료되면 주소지 경찰서에 재 입고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60)

사천시 고시 제2013 - 184호

## 고 시 문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 사 천 시 장

점 용 자	성 명	배 광 수	주 소	거제시 수월1길 18(수월동)
하 천 명	구랑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976번지		
	면 적	공사중 일시점용 86m <sup>2</sup>		
	기 간	건축허가일로부터 360일간		
	목 적 및 개 요	부지 진출입을 위한 교량보수공사		
열람서류 :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사 천 시 공 보

제306호(61)

사천시 고시 제2013- 185호

##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일

## 사 천 시 장

###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제4호

번호	초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지정해제 사유	비고
1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06-3	목장용지	9,883	9,883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2년이상 관라·이용되지 아니한 초지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831-3779)로 문의]

### 4. 이해 관계인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